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○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26일

○ 발 의 자 : 김정옥·김대현·김태우·박종필·박창석·손한국·이동욱
이영애·이재숙·이태손·전경원·조경구·황순자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7일

2. 제안이유

○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‘묻지마 칼부림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, 성범죄, 폭행, 절도 등 도시철도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무시설에 안전장비를 구비·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도시철도운영자가 역무시설에 안전장비를 구비·비치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5조제4항)

○ 안전장비 종류와 비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, 보고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제5항)

4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철도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과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, 폭행,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무시설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비·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○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**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**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고,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최근 도시철도 역사 인근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및 범죄예고글 게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[1]하고 있고, 성범죄, 폭행, 절도 등 도시철도 내 범죄 또한 연평균 1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내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※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내 범죄현황

(단위 : 건)

연 도	계	폭 행	절 도	성범죄	기타(점유이탈물 횡령, 과실치상 등)
2018년	**140**	49	11	33	47
2019년	**132**	34	19	27	52
2020년	**97**	24	10	19	44
2021년	**109**	25	10	32	42
2022년	**84**	27	3	29	25

(출처 : 대구교통공사)

* 기타 범죄 중 80% 이상이 점유이탈물 횡령(유실물 신고없이 횡령) 건임.

1) 최근 발생한 다중밀집시설 융기 난동 등 주요 사건 현황
- 2023.7.21.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 / 사망 1명, 부상 3명
- 2023.8.3. 서현역(AK플라자 분당점) / 사망 2명, 부상 12명
- 2023.8.7. 동대구역 흉기소지자 체보 / 피해자 없음
- 2023.8.17.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 / 사망 1명
- 2023.8.19. 2호선 홍대입구역~합정역구간 흉기난동 / 부상 2명
- 2023.8.31. 광명역 2번 출구 폭행사건 / 부상 2명

○ 한편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, 특히 '23년 8월 기준 일평균 수송인원이 386천명에 달하는 대구 도시철도 시설 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입하도록 규정한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.

〈도시철도 일평균 수송 현황〉

○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도입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으나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장비 구비·비치를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, 호신용 보호구 등 보다 실질적으로 범죄대응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구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, 범죄의 유형이 위협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과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.

□ 이상으로, **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